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6

2024. 7. 15.(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7월 15일

-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지역마다의 정체성과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이 브랜드가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O 이에,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상징물 관리, 활용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3조)
-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민선 8기 충북도는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확립하고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청북도의 심벌마크를 교체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활용하는 등 '충북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상 지역 브랜드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 도시명, 심벌, 캐릭터, 슬로건, 명소, 축제, 특산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상징체계로써, 지역마다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고 지역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충청북도의 상징물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는 목적 및 규정내용이 상징물 관 리에 한정되어 있어 상징물보다 더 포괄적인 브랜드의 개념을 담기 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O 안 제1조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는 상징물을 포함한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정 및 개정, 관리 및 홍보, 상징물 활용 사업 추진,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
 - 본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는 상징물 관리에 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 하여 상징물을 포함하는 브랜드 관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충북브랜드'와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함.
- O 안 제3조는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
 -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충북드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등에 대한 자문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충북브랜드 관리 등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짐.
- O 안 제14조는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바,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충북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충청 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내용 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충북브랜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징물, 경제, 문화, 환경,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기반시설, 인프라, 여가생활 등도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2. "상징물"이란 도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가. 심벌마크: 별표 1

나. 브랜드슬로건: 별표 2

다. 도기: 별표 3

라. 문장·철인·휘장: 별표 4

마. 캐릭터: 별표 5

- 바. 도조(道鳥): 까치
- 사. 도화(道花): 백목련
- 아. 도목(道木): 느티나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은 철인·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도 관리 물자
 -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③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 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 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다.
 -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대표상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활용 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도가 후원하는 경우
-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충북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2. 충북브랜드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 3. 충북브랜드의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 4.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충북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사람이 된다.
 - 1. 기획관리실장
 - 2.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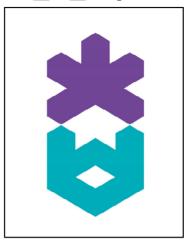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브랜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도에 소속된 홍보,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고 위 위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충북브랜드 활용 과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충북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 2. 충북브랜드 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활동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③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참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 벌 마 크



<심벌마크 의미>

- 1. 심벌마크는 충북의 초성인 '치읓'과 '비읍'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충청북도의 명칭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있음
- 2. 좌우대칭인 형태와 함께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중심을 향해 균형감 있게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을 구현함
- 3. '치읓'과 '비읍' 사이의 화살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충북의 위상을 형상화함
- 4. 심벌마크를 구성하는 획수는 총 11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충북의 11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내포함
- 5. 형태 중 'ㅊ'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도민, 'ㅂ'은 충북의 호수를 상징하여 충북의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민의 모습을 형상화함

<색상 기준>

상단의 자색 '치읓'은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미래지향성 그리고 포용성을 표현하며, 하단의 청록색 '비읍'은 충북의 호수를 상징하여 친환경·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충북 자색 (Chungbuk Purple)	충북의 성장가능성, 미래지향성, 포용성	PANTONE 2088C R114 G69 B152 C65 M80 Y0 K0
충북 청록색 (Chungbuk Blue Green)	충북의 호수, 친환경·지속가능성	PANTONE 3115C R0 G174 B187 C80 M0 Y30 K0

브 랜 드 슬 로 건



<브랜드슬로건의 의미>

- 1. 충북이 지리적 위치,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곳·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를 이미지로 형상화
- 2. 중(中)과 심(心)이 합쳐져 충(忠)북을 이룬다는 우리도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

<색상 기준>

충북 자색 (Chungbuk Purple)	충북의 성장가능성, 미래지향성, 포용성	PANTONE 2088C R114 G69 B152 C65 M80 Y0 K0
충북 청록색 (Chungbuk Blue Green)	충북의 호수, 친환경·지속가능성	PANTONE 3115C R0 G174 B187 C80 M0 Y30 K0
충북 감색 (Chungbuk Dark Blue)	충북의 도민, 통합·상생·발전	PANTONE 288C R0 G22 B85 C100 M80 Y0 K60

도 기



· 바탕 : 충북 흰색

· 마크 : 충북 자색(상단, 치읓)

충북 청록색(하단, 비읍)

· 로고(글씨) : 충북 감색



※ 도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문장과 철인은 도기의 예에 의하며,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캐 릭 터

(1) 기 본 형



고드미

바르미

(2) 내용설명

"고드미"와 "바르미"는 21C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를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친근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충북과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예로부터 중원문화의 발상지요, 애국충절의 고장인 충북전래의 선비정신과 기상을 바탕으로 21C 새 시대를 "올곧고", "바르게"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휘장 증여대장

번 호	증 여 일 자	국 적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증 여 사 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	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	용승인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연	기)	
충청북도지사 귀하					
각	1부		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	본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용 상징물					
사용승인일					
변경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용 목적					
변경사용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	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	당 변경승인을 신청	헝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성명	(서명 또는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O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O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 및 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O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 및 안건 심사 수당 등 지급
- ※ 근거:「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 O 브랜드참여단 운영 소요 경비

3. 관련조문

- O 안 제10조(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 O 안 제14조(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 (5년간)
- 나. 추계 결과 : 연 170,490천원
 - 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5,490천원
 - 참석수당 : 2,900천원 100천원(기본 2시간) × 29명 = 2,900천원
 - 。원거리수당: 560천원 (30천원×7명) + (50천원×7명) = 560천원
 - * 50km초과~100km이내: 30천원, 100km초과~200km이내: 50천원
 - 안건심사수당: 2,030천원70천원(300쪽 초과) × 29명 = 2,030천원

- 브랜드참여단 구성 및 운영 : 165,000천원
 - 참여단 출범식 : 2,500천원2,500천원 × 1식 = 2,500천원
 - 참여단 교육 : 6,000천원 200천원 × 6명 × 5회 = 6,000천원 * 1급강사 / 2시간 기준
 - 브랜드 발굴・창작 활동비 : 30,000천원 1,000천원 × 30명 = 30,000천원
 - 아이디어대회 및 결과보고회 등 : 126,500천원
 126,500천원 × 1식 = 126,5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٨	세 출	170,490	170,490	170,490	170,490	170,490	852,450
위	원회 수당	5,490	5,490	5,490	5,490	5,490	27,450
旦i	랜드참여단 운영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	재원 조달	170,490	170,490	170,490	170,490	170,490	852,450
	소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170,490	170,490	170,490	170,490	170,490	852,450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170,490	170,490	170,490	170,490	170,490	852,450
	지방채						
	기금						
į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